

청주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7168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지성현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3. 23.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5,290원 및 그중 9,688,168원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2. 1.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1. 5. 11.자 매매계약을 10,975,2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0,975,215원 및 그중 9,688,168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음성지점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법적절차비용 등에 대한 상환 약정,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약정 포함),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21. 7. 21.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21. 12. 14. 9,688,1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 127,122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은 2021. 5. 11. 피고 C과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컨테이너, 재활용 허가사항 및 기계류 등을 포함하여 4,000만 원으로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4,000만 원은 매매대금 4억 원에 포함된 것이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D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C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C은 2021. 5. 13. 피고 A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액(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5. 21. D주식회사에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 A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를 상대로 구상금(원금 212,720,906원)을 청구하고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가액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 11.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0991). 관련 사건 판결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의 기계장치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고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은 원고와의 신용보증 내지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5,29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9,688,16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22. 1. 17.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 실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대출이 실행되고 그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2개월 10일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후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실제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의 기계장치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피고 C은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강조하지만, 피고 A은 영업용 자산 일체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매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사해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 수익자의 악의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였고 당시 피고 A의 채무상태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과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영업용 자산 일체(재활용 허가사항 및 기계류 등 포함)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일 후 2일 안에 잔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정하였고 그 이행이 이루어졌는바, 계약의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 기준 감정평가액은 473,104,750원으로 매매대금액 3억 6,000만원(기계류 등 4,000만 원 부분 제외)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관련 사건 판결에서는 함께 양도된 기계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236,633,970원 상당으로 보았다. 거래 전체로 볼 때, 시세와 거래대금 사이의 간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C도 동종 영업을 하면서 과거 피고 A과 거래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취소 및 가액상환의무

1)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피고 C의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위 피보전채권액에는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변론종결시인 2023. 2.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10,975,215원[= 9,815,290원 + {9,688,168원 × (1년 + 72일/365일) × 10%}, 원 미만 버림]이다.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473,104,750원과 피고 C이 변제한 피담보채무액 3억 원을 고려할 때,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이 분명해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인 위 10,975,2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10,975,215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9,688,168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sup>1)</sup>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

별지

1) 피고 C은,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액에서 피고 C이 증축하여 가치가 증대된 부분의 가액이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제한된다)이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공동담보가액에 미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관련 사건에서 공동담보가액 내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수의 가액배상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익자로서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때 수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사해행위취소 판결 중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익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참조).